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일준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8695
----------	-------

발의연월일 : 2026. 4. 29.

발 의 자 : 서일준·김 건·주호영
이인선·박충권·조지연
김장겸·김대식·이달희
김소희·한지아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초·중등교육법」은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위하여 교육상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은 장기 결석이 불가피한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위하여 원격수업의 실시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정신질환으로 인해 등교가 어려운 학생은 「초·중등교육법」상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으로 분류되지 않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상 원격교육의 대상인 특수교육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아 적절한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의사가 학습에 제약을 받는다고 인정한 정신질환 학생을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으로 분류하고, 교육부장관 등은 정신질환 학생에게 원격수업 등 대안적 교육방법을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정신질환 학생의 교육받을 기회를 확대하려는 것임(제28조제1항제1호의2 및 제2

항 신설).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초·중등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11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중전의 제3항) 중 “제2항에”를 “제3항에”로 하며, 같은 조 제9항(중전의 제8항) 중 “제7항에”를 “제8항에”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중전의 제9항) 중 “제7항 및 제8항에”를 “제8항 및 제9항에”로 하며, 같은 조 제11항(중전의 제10항) 중 “제3항에”를 “제4항에”로 한다.

1의2. 정신질환이 있는 학생 중 「의료법」 제77조에 따른 전문의 (신경과, 신경외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로 한정한다)가 학습에 제약을 받는다고 인정하는 학생

②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제1항제1호의2에 해당하는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교육을 위하여 원격수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안적 교육방법을 제공하여야 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8조(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교육)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학생들(이하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이라 한다)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업일수와 교육과정을 신축적으로 운영하는 등 교육상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p> <p>1. (생 략) <u><신 설></u></p> <p>2.·3. (생 략) <u><신 설></u></p>	<p>제28조(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교육) ① ----- ----- ----- ----- ----- ----- ----- ----- ----- -----.</p> <p>1. (현행과 같음) <u>1의2. 정신질환이 있는 학생 중 「의료법」 제77조에 따른 전문의(신경과, 신경외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로 한정한다)가 학습에 제약을 받고 인정하는 학생</u></p> <p>2.·3. (현행과 같음) <u>②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제1항제1호의2에 해당하는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교육을 위하여 원격수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안적 교육</u></p>

② (생략)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 2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기초로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현황 및 교육 상황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④ ~ ⑦ (생략)

⑧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판단기준 및 제7항에 따른 충분히 생각할 기간과 그 기간 동안의 출석일수 인정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⑨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제 7항 및 제8항에 따른 기간 동안 학생이 교육과 치유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⑩ 제3항에 따른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운용에 필요한 정보 수집 범위, 방법, 절차, 보존 기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방법을 제공하여야 한다.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④ -----제 3항에-----

-----.

⑤ ~ ⑧ (현행 제4항부터 제7항까지와 같음)

⑨ -----

-----제8항에-----

-----.

⑩ -----제 8항 및 제9항에-----

-----.

⑪ 제4항에-----

다.

--.